# 무배당 롯데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

약 관

## 무배당 롯데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약관

#### 제1조(목적)

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급여보장법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16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'신탁업자'라 함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.
- 2. '보험료'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(이하 "계약자"라 합니다)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3. '보험금'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(이하"수익자"라 합니다)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령", "시행규칙"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## 제3조 (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)

이 계약의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보험수익자(이하 '수익자'라 합니다)는 신탁업자로 합니다.

#### 제4조 (신탁업자의 수행업무)

-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5조 (보험회사의 수행업무)

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- 1. 보험료의 수령
- 2.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
- 3.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 제6조 (계약의 성립)

-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 다만,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## 제7조 (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)

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합니다) 및 청약서 사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(사이버몰)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사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사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,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제8조 (보험기간)

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.

#### 제9조 (보험료의 납입)

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
## 제10조 (단위보험)

- ① 이 계약에서 "단위보험"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고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"이율보증기간"이라 하며, 이 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
-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,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.
-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,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11조 (적용이율)

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'별표1'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결정합니다.

#### 제12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## 제13조 (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)

-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자)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적용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제14조 (해지환급금)

-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(별표2 참고)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-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, 퇴직급여의 지급, 제도폐지, 법령변경에 따른 해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15조 (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)

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.

#### 제16조 (배당금의 지급)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
## 제17조 (소멸시효)

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#### 제18조 (해지시 구비서류)

제12조(계약의 해지)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청구서(회사양식)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제19조 (분쟁의 조정)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제20조 (관할법원)

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(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)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21조 (약관의 해석)

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
-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-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
#### 제22조 (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)

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(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)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제23조 (회사의 손해배상책임)

-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,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-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수익자의 곤궁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## 제24조 (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)

-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습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

#### 제25조 (준거법)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#### 제26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제27조 (예금자보호 안내)

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. 단,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

- 1.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- (1) 적용이율의 계산
  - 가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

회사는 매월 1일 및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,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설정된 단위보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

| 각 단위보험 규모        | 최저한도      | 최고한도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5억원 미만           | 기준이율의 80% | 기준이율의 165% |
| 5억원 이상~10억원 미만   |           | 기준이율의 175% |
| 10억원 이상~30억원 미만  |           | 기준이율의 185% |
| 30억원 이상~100억원 미만 |           | 기준이율의 195% |
| 100억원 이상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|

- (주) 최고한도 산출 이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합니다.
- 나.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

회사는 매월 1일 및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, 회사손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 단,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

-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「회사채 수익률」, 「국고채 수익률」, 「통화안정증권수익률」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.
- 지표금리(%) = ( A1 + B1 + C1 ) / 3
  - A1 : 국고채(1년만기)수익률의 평균값
  - B1 : 회사채(1년만기, 무보증, AA-)수익률의 평균값
  - C1 : 통화안정증권(1년물)수익률의 평균값
- (주) ① 국고채수익률 :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
  - ② 회사채수익률 :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
  - ③ 통화안정증권수익률 :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물 통화안정증권

수익률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

- ④ 평균값은 적용개시일이 1일인 경우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일부터 15일까지, 적용개시일이 16일인 경우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
- (2) (1)호의 적용이율은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각의 보험료 납입 건 별로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합니다.
- (3)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확정 적용한 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합니다.
- 2.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(이하 계약자라 함) 또는 보험대상 자 (괴보험자)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(e-mail, 전자문서, Web 등)으로 통지합니다.
- 3.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.2%로 합니다.
- 4.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.

#### 시장가격조정률

1.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장가격조정률(MVA)을 적용합니다.

계약일부터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적립금에 (1-시장가격조정률)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.

2. 시장가격조정률(MVA)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$$MVA = \max \left[ 1 - \left( \frac{1+i_j}{1+i_h} \right)^{\frac{\varepsilon}{\eta}}, 0 \right]$$

○ MVA의 최대한도는 5%로 합니다.

주) 잔여보증기간 :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

 $i_i$ :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적용이율

ε: 잔여보증기간의 일수

n: 당해 보험연도의 일수(365 또는 366)

 $i_h$ : 해지시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(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)

※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=0

3.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적용이율보다 높은 경우 해지화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(MVA)이 적용되어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